

## ○○○씨 대종회 정관

### 第 1 章 : 總 則

第 1 條(名稱) 本會는 ○○○氏 大宗會(以下 本會)라 稱한다.

第 2 條(構成) 本會는 ○○○氏로 構成한다.

第 3 條(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首都圈 內에 設置한다.

第 4 條(目的) 本會는 先祖의 業德과 潛光을 追慕 讚揚하고, 同祖同孫의 愛宗情神으로 宗親相互 間의 親和와 派宗會 間의 紐帶를 強化토록하여 相扶相助의 共榮之念을 涵養 振興케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5 條(事業)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

1. 崇祖 敦宗事業
2. 大同譜 刊行 및 大宗會 會報 發刊事業
3. 育英 및 獎學事業
4. 其他 本會에 맞는 事業

第 6 條(組織) 本會는 派宗會를 基本組織으로 하고, 必要에 따라 各 市道에 分, 支會를 設置할 수 있다.

### 第 2 章 : 會員의 權利와 義務

第 7 條(權利) 本會의 會員은 各急 會議를 通하여 本會 運營에 參與할 수 있으며, 選舉 權과 被選舉權을 갖는다.

第 8 條(義務) 本會의 會員은 다음의 義務를 진다.

1. 本會 定款 및 諸 規程의 遵守
2. 本會 各級 會議의 議決事項 遵守
3. 本會 所定の 會費 및 諸 負擔金 納付

第 9 條(懲戒) 本會의 會員이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常任理事 會의 議決을 거쳐 會長이 懲戒를 加하되, 別途로 定하는 懲戒規程에 依한다.

1. 本會 名譽나 威信을 毀損시켰을 때
2. 本會 財産에 被害를 끼쳤을 때
3. 本會의 事業을 妨害했을 때
4. 本會 定款 第8條의 規定을 違背했을 때

### 第 3 章 : 任 員

第10條(任員) 本會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長 : 1名
2. 副會長 : 10名(傘下 6大 派宗會當 1名, 職能別擔當 副會長 4名)
3. 監事 : 6名(6大 派宗會 當 1名)
4. 削除
5. 削除

第11條(選出) 會長, 副會長 및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但, 6大 派宗會를 代表하는 本會 自動 副會長 및 監事 豫定者는 總會 20日 前까지 本會에 登錄해야 하며, 職能別 擔當 副會長은 會長이 推薦하여 總會의 承認을 얻는다.

第12條(任期)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第13條(補選) ① 第10條 第2號의 派宗會를 代表하는 自動副會長 및 第3號 監事の 缺員이 生겼을 時는 當該 派宗會에서 即時 選出하여 本會에 通報해야 하며, 會長은 이를

署理로 指名하여 職務를 代行케하고, 다음 總會에서 補選을 要請한다. ② 그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 期間으로 한다. ③ 職能別擔當 副會長의 缺員이 生겼을 時는 會長의 推薦에 依하여 總會의 承認을 받아야하며, 그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 期間으로 한다.

第14條(職務) 任員은 다음 各 號의 職務를 擔當한다.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轄한다.
2.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 時는 首席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理한다. 首席副會長은 會長團會議에서 互選하며, 首席副會長 有故 時는 7日 以內에 互選한다.
3. 派宗會를 代表하여 選出된 自動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本會와 派宗會 間의 有關業務를 管掌하고 本會 運營을 責任진다.
4. 各 職能別擔當 副會長은 會長의 指揮를 받아, 다음의 職務를 遂行한다.

가. 總務擔當 副會長은 常勤하며, 다음 業務를 遂行한다.

- (1) 一般庶務에 關한 事項
- (2) 各級會議에 關한 事項
- (3) 各種 祭享에 關한 事項
- (4) 賞罰에 關한 事項
- (5) 其他 他 部署에 屬하지 않은 事項

나. 財政擔當 副會長

- (1) 本會 財產의 管理 및 增殖에 關한 事項
- (2) 財政 및 會計에 關한 事項
- (3) 會費 및 贊助金 受納에 關한 事項

다. 事業擔當 副會長

- (1) 崇祖敦宗에 關한 事項
- (2) 大同譜 및 大宗會 會報 發刊에 關한 事項
- (3) 族譜 電算化 및 管理運營에 關한 事項
- (4) 各 派宗會 重要事業 支援에 關한 事項
- (5) 育英 및 獎學에 關한 事項

라. 組織擔當 副會長

- (1) 各 派宗會 傘下 分, 支會 組織強化에 關한 事項
- (2) 各種行事 計劃에 關한 事項
- (2) 其他 組織強化와 關聯되는 重要 事項

5. 削除

6. 削除

7. 監事는 本會 會務 全般을 監査하며, 常任理事會 및 總會에 이를 報告해야 한다. 必要하다고 判斷될 時는 會長에게 理事會 및 總會의 召集을 要求할 수 있다. 會長 이 不應 時에는 直接 召集權을 行使하여 그 議長이 된다.

但, 監事는 會議에 參席하되, 議決權은 없다.

第15條(名譽會長) 本會는 新任會長 選出時 總會의 同意를 받아 直前 會長을 名譽會長으로 推戴한다.

第16條(顧問) 本會 會長 歷任者는 自動的으로 顧問에 推戴되며, 其外는 本會 發展에

至大한 貢獻을 한 宗人 및 社會的으로 德望이 높은 宗人을 總會의 同議를 받아 推戴한다.  
 第17條(制約) 本會의 任員은 如何한 境遇라도 本會의 名義를 利用하여 自己營利行爲를 할 수 없다.

第18條(解任) 本會의 任員으로서 第9條 및 第17條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였을 時는 會長團 5人 以上の 發意 및 常任理事 10人 以上の 同意를 얻어 會長이 該當者의 職權을 停止시키고 常任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解任處分 할 수 있다.

#### 第 4 章 : 會 議

第19條(會議) 本會는 議決機關으로 다음의 各級 會議을 둔다.

1. 總會(定期總會 및 臨時總會)
2. 常任理事會
3. 理事會
4. 會長團會

第20條(召集)

- ① 定期總會는 年 1回 3月 마지막 日曜日에 開催한다.
- ② 臨時總會, 常任理事會, 理事會, 및 會長團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各級 會 構成員의 3分の 1 以上の 召集要求 및 監事의 召集要求가 있을 때 會長이 召集하되, 召集事由와 附議案件을 明示하여 1週日 前에 通報해야 한다. 但, 緊急을 要할 時는 電話 通報로 召集할 수 있다.

第21條(議事) 各級 會議는 會長이 議長이 되며, 在籍員 過半數 參席으로 開會하고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但, 解散은 3分の 2 以上으로 議決한다.

第22條(委任) 各級 會議에 그 構成員이 不參 時에는 議決權을 參席者에게 委任하고, 委任狀을 作成하여 會議 前에 會長에게 提出해야 한다.

第23條(書面議決) 會長은 各級 會議 附議事項이 輕微하다고 認定할 時는 書面議決로 對替할 수 있다.

第24條(議決除斥) 本會 任員으로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그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1. 自身の 選任 또는 解任에 關한 事項.
2. 金錢 및 財産의 授受를 隨伴하는 事業에 本人과 利害關係가 있는 者.

第25條(會議錄) 本會는 各級 會議마다 會議錄을 作成하여 參席者 中에서 會長이 指名한 2人 以上の 署名捺印을 받아 備置한다.

第26條(諮問機構) 本會는 名譽會長, 顧問 및 會長이 推薦하는 元老宗人으로 諮問機構를 設置할 수 있다.

#### 第 5 章 : 總 會

第27條(構成) 總會는 다음 各 號에 規定하는 代議員으로 한다.

1. 前, 現職 會長團 및 監事
2. 名譽會長 및 顧問
3. 財政委員, 運營委員 및 特志理事
4. 常任理事 및 理事
5. 派宗會에서 選出한 代議員(選出 代議員의 數와 그 選出方法은 代議選出規程에 依한다)

第28條(議決事項) 總會에서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會長, 副會長(派宗會長 및 職能別擔當 副會長), 常任理事 및 監事 選出에 關한 事項
2. 名譽會長 및 顧問 推戴 同議에 關한 事項
3. 定款 改正에 關한 事項
4. 豫算 및 決算 承認에 關한 事項
5. 事業計劃 承認에 關한 事項
6. 財産取得 및 處分에 關한 事項
7. 各級 會議에서 附議한 事項
8. 其他 會長이 重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 第 6 章 : 常任理事會

第29條(構成) ① 常任理事會는 會長團 및 常任理事로 構成한다. ② 常任理事는 派宗會의 推薦으로 總會에서 選出하고, 그 數는 30名 内外로 하되, 派宗會別 世代 數에 比例한다. ③ 그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第30條(議決事項) 常任理事會의 議決事項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總會에서 委任한 事項
2. 總會에서 附議한 事項
3. 總會 以外の 各級 會議에서 建議한 事項
4. 諸 規程 制定과 改廢에 關한 事項
5. 削除
6. 任員 補選 및 理事 任命 同議에 關한 事項
7. 本會 事業 推進을 爲한 特別機構 設置에 關한 事項
8. 會員 徵戒 및 第18條 規定에 關한 事項
9. 其他 本會 運營에 關한 事項

## 第 7 章 : 理 事 會

第31條(構成) ① 理事會는 第10條에서 規定한 任員, 舊 定款에 依한 財政委員, 運營委員 및 特志理事로 하며, 그 外는 各 派宗會長の 推薦에 依하여 會長이 委囑한다.

② 그 數는 500名 内外로 한다.

第32條(議決事項) 理事會의 議決事項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常任理事會에서 委任한 事項
2. 總會에서 委任한 事項
3. 其他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事項

## 第 8 章 : 會長團會

第32條의 1(構成) 會長團會는 第10조 第1, 2號의 任員으로 한다.

第32條의 2(議決事項) 會長團會에서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各級會에서 委任한 事項
2. 各級會에 附議할 事項
3.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事項

## 第 9 章 : 資 産 과 會 計

第33條(資産의 區分) 本會의 資産은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區分하여 管理한다.

基本財産은 別紙目錄의 財産과 第38條의 規定에 依한 積立金 및 其他 常任理事會의 議決에 依하여 基本財産으로 定하는 財産으로 한다. 普通財産은 前 2項에서 定하는 以外의 財産으로 한다.

第34條(資産의 管理) 第33條 第2項의 基本財産을 取得, 賣渡, 交換, 贈與 및 擔保에 提供하고자 할 때에는 常任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總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35條(經費와 維持方法) 本會의 維持經費는 各 派宗會의 分擔金, 事業 收益, 特志宗人의 寄附金 및 會費收入으로 充當한다. 但, 會費收入은 派宗會를 設置運營하는 宗派는 分擔金으로 對替하며, 其外 宗派는 派宗會를 設置 運營할 때까지 1991년부터 施行하고 있는 通常會費制로 한다. 分擔金 配定은 派宗會別世帶數에 比例함을 原則으로 한다. 通常會費는 年會費制로 施行할 수 있다.

第36條(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1月 1일부터 12月 31일까지로 한다.

第37條(會計의 區分)

① 本會의 會計는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로 區分한다.

② 特別會計는 各種 事業別로 運營하는 事業을 區分하여 經理하며, 事業終了 後 그 損益은 本會에 歸屬한다.

第38條(歲計剩餘金の 處理) 本會의 每 會計年度 歲計剩餘金은 借入金의 償還과 翌年度에 移越 使用하는 分을 除外하고는 積立해야 하며, 이 積立金은 基本財産으로 한다.

第39條(豫算 및 決算) 本會의 豫算 및 決算은 常任理事會의 審議를 거쳐 總會의 承認을 받아야 하며, 決算書는 監事의 監査 報告書를 添附해야 한다.

## 第 10 章 : 事 務 局

第40條(事務局 設置) 本會는 會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事務局을 設置한다.

第41條(業務分掌) 本會는 業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第14條 第4號 “가” 項 乃至 “라” 項에 依據, 職能別로 分掌하여 擔當副會長이 이를 管掌하고 總務擔當 副會長이 業務를 統轄한다.

但,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는 各 職能別 特別委員會를 設置할 수 있다.

第42條(常勤副會長) 常勤副會長은 總務擔當 副會長이 兼任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任期는 會長의 任期와 같다. 常勤副會長은 會長의 指揮를 받아 事務局 業務를 統轄한다. 事務局에 必要한 職員은 會長이 任免한다. 但, 事務局 設置規程은 別途로 定한다.

第43條(給與) 常勤任職員은 給與規程에 依하여 報酬를 支給하며, 非常勤 任員도 會務 關係로 週 2回 以上 出勤할 때는 給與 규정에 依한 手當을 支給한다.

## 第 11 章 : 派 宗 會

第44條(派宗會 設置) 本會는 傘下 6大 宗派別(伯參判公派, 季參判公派, 安簡公派, 晉川君派, 大司成公派 및 判書公派)로 派宗會를 設置할 수 있다.

第45條(派宗會 運營) 派宗會 運營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派宗會는 自律的인 運營에 必要한 定款(會則)을 制定하여 獨立運營한다.

2. 第35條 收入金에 對하여는 本會와 派宗會가 協議하여 運用한다.

第46條(業務委任) 本會는 다음의 業務를 派宗會에 委任한다.

1. 所屬 分會의 組織 및 管理에 關한 事項
2. 通常會費 徵收(未收金 包含) 및 管理에 關한 事項
3. 其他 本會가 委任 또는 指示하는 事項

第47條(派宗會의 權利) 派宗會는 本會에 對하여 다음의 權利를 保有한다.

1. 派宗會 代表의 本會 副會長 自動就任權(所屬 派宗會長 또는 派宗會 推薦 宗人).
2. 通常會費 徵收權.
3. 派宗會 宗事 推進에 對한 物心兩面의 支援 要請權.

第48條(派宗會의 義務) 派宗會는 本會에 對하여 다음의 義務를 진다.

1. 派宗會 組織表(任員名單) 定期 提出(每年 2月 20日 限).
2. 本會 配定 分擔金(分期別) 期間內 納付.
3. 本會 推進 事業의 弘報와 積極的인 協助.
4. 本會가 指示한 資料提出 等 諸般 要請事項에 對한 協助.
5. 年間 事業計劃書 및 實績 提出.

## 附 則

1. (施行) 本 定款은 總會 通過日로부터 施行한다.

2. (慣例) 本 定款에 規定되어 있지 않은 事項은 一般慣例에 準한다.

### ◆ 本 定款 制定 및 改正 經緯

1. 1978. 1. 22 制定 創立總會 通過.
2. 1979. 7.8 改正 常任理事 選任 : 總會選出 → 會長任免
3. 1992. 3. 20 改正 ① 會計年度 變更 : 3月-翌年 2月 → 1月-12月  
② 理事增員 : 250名 內外 → 500名 內外

附則(2002年 3月 31日 通過 第3次 改正)

1. (施行日) 本 定款은 總會 通過日로부터 施行한다.

2. (經過措置) ① 本 定款 第11條 ② 項과 第27條 3號의 財政委員, 運營委員 및 特志理事는 舊 定款에 依據 從前대로 施行한다. ③ 本 定款 施行 當時 通常會費(未收金 包含)의 徵收는 第7章 派宗會 規定에 依據, 派宗會 獨立運營 即時 自律에 맡긴다. 本 定款 施行 當時 本會 徵戒規程, 代議員 選出規程 및 分, 支會 設置 規程은 從前대로 施行한다.

附則(2004年 3月 28日 通過. 第4次 改正)

1. (施行日) 本 定款은 總會 通過日로부터 施行한다.

2. (經過措置) ① 本 定款 第31조 1項의 財政委員, 運營委員 및 特志理事는 舊 定款에 依據 從前대로 施行한다. ② 本 定款 施行 當時 本會 分會 및 支會 設置規程, 代議員 選出規程, 會員 徵戒規程, 事務局 設置規程 및 給與規程은 從前대로 施行한다.